

청주지방법원 2024. 10. 25 선고 2023가단8178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원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18.

판 결 선 고 2024. 10. 25.

주 문

- 소외 주식회사 C와 소외 D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, 허가 및 토지 등에 대한 모든 권리에 관한 2021. 7. 8.자 양도행위를 취소한다.
- 피고는 원고에게 39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9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

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'변경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3. 기각하는 부분

일반적으로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,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청구와 함께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법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와 동시에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금의 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, 따라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(대법원 2002. 3. 26. 선고 2001다72968 판결, 2002. 6. 14. 선고 2000다3583 판결 등) 고 할 것이므로 가액 배상액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.

판사 이효두

별지